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제 안 자 : 정무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2206217	권칠승의원	2024.12.5.	제422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정무위원회(2025.2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
2208737	김한규의원	2025.3.10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5.8.26.)
2214324	이양수의원	2025.11.17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5.11.24.)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(2025.11.25.)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

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1차 정무위원회(2025.11.27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 포함)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병원”이라 함)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광주, 대구, 대전, 부산,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,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,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.

이에,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등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본문 중 “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2.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
같은 조 제2항 중 “국가나 지방자치단체”를 “제1항의 의료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보훈병원에서”를 “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”를 “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”로 한다.

제33조의2 전단 중 “보훈병원에서의”를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”로,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2항 전단 중 “공단”을 “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항·제5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진료)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 다만,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33조(진료) ①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----------. ----------.
<신 설>	1. 국가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"보훈병원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<신 설>	2.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
<신 설>	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"공공단체의료기관"이라 한다)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제1항의 의료기관-----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	⑤ ----------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----------. ----------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⑥ · ⑦ (생 략)	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	제33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----------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----------

외의 의료기관에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---------보훈병원과 공공단체 의료기관----------. ----------.
제36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(생략)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36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----------. ----------.